

# 환경관리규정

제정 : 2015. 08. 07.

담당 : 시설관리팀(02-950-5560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적용범위)	제4조(조직 및 업무)
제5조(분리수거)	제6조(배출기준)	제7조(교육)	제8조(세부사항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"환경관리"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말한다.

② "배출기관"이라 함은 이 대학교에서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대학교의 각 배출기관에 적용한다.

**제4조(조직 및 업무)** ① 이 대학교의 환경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는 사무정보처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.

② 배출기관의 장은 당해 부서장이 겸임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유해물질의 관리
2. 환경관리 담당자 및 유해물질 취급자의 지정
3. 기타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환경관리 담당자는 유해물질 취급자를 감독한다.

④ 유해물질 취급자는 관계법령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환경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**제5조(분리수거)** 유해물질 취급자는 각종 폐기물을 성분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배출기준)** 배출기관에서 관계 법령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무정보처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출기관의 장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교육)** 유해물질 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